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인사혁신처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 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제처,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3. 8. 00. ~ 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 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부이사관 또는 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5급공채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5급공채팀

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관리자교육과장 및 전문역량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관리자교육과장 및 전문역량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제2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17명(4급 1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5명, 6급 6명, 7급 2명, 8급 2명)”을 “20명(3급 또는 4급 3명, 4급 1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5명, 6급 6명, 7급 2명, 8급 2명)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“8명(3급 또는 4급 1명, 5급 2명, 6급 4명, 전문경력관 가군 1명)과”를 “9명(3·4급 1명, 4급 1명, 5급 2명, 6급 4명, 전문경력관 가군 1명)과”로 한다.

제19조는 삭제한다.

별표1, 별표1의2, 별표3, 별표3의2,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]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본문 관련)

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404
정무직 계	1
처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403
고위공무원단	9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	7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1
서기관	2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	14
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5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8
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24
행정사무관	19
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학예연구관·기록연구관·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3
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15
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73
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12

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4
전산사무관	1
행정주사	20
행정주사·사서주사·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2
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	21
공업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	12
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	66
전산주사·행정주사·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	2
전산주사	2
행정주사보	5
행정주사보·사서주사보·학예연구사·기록연구사·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	2
전산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	1
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	21
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·방송통신주사보·운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	4
보건주사보·의료기술주사보·간호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	1
전산주사보	4
행정서기	3
전산서기 또는 행정서기	6
공업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행정서기	1

운전서기	1
행정서기보	3
전산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	2
공업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	4
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(비서)	1
운전서기보	2
사무운영서기보	4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공업전문관 · 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	10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인사기록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인사통계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인사기록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촬영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채점 담당)	1

[별표1의2]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단서 관련)

<u>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단서 관련)</u>	
총계	403
정무직 계	1
처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402
고위공무원단	9
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	7
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1
서기관	2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	14
과학기술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5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8
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23
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	1
행정사무관	19
전산사무관 · 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학예연구관 · 기록연구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3
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15
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83
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	12

또는 행정사무관	
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4
전산사무관	1
행정주사	20
행정주사 · 사서주사 ·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2
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	21
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	12
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	56
전산주사 · 행정주사 · 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	2
전산주사	2
행정주사보	5
행정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학예연구사 · 기록연구사 ·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	2
전산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	2
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	22
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· 운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	4
보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간호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	1
전산주사보	4

행정서기	3
전산서기 또는 행정서기	5
운전서기	2
행정서기보	3
전산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	2
공업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	4
운전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4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	10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인사기록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인사통계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인사기록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촬영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채점 담당)	1

[별표3]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

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

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 계	154
정무직 계	1
원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153
고위공무원단	4
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	1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	6
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4
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	23
행정사무관	1
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2
전산사무관	2
방송통신사무관	1
행정주사	21
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	2
공업주사 · 식품위생주사 또는 시설주사	2

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1
전산주사	3
방송통신주사 · 공업주사 또는 임업주사	3
행정주사보	10
간호주사보	1
방송통신주사보	2
행정서기	6
전산서기 또는 행정서기	1
공업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· 방송통신서기 또는 행정서기	4
전산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	7
공업서기보 · 임업서기보 · 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5
운전서기보	4
조리서기보	1
방호서기보	10
농림운영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3
전문경력관 가군(외국어훈련 담당)	2
전문경력관 가군(국제협력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교육개발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이러닝콘텐츠 담당)	1

전문경력관 가군(체육교육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국제교류협력 담당)	2
전문경력관 나군(방호관리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구내식당조리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의무실운영관리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교육과정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교육개발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교육평가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이러닝콘텐츠 담당)	2
전문경력관 다군(교류협력 담당)	1
임기제 교수요원(가급)	5

비고: 임기제 교수요원(가급) 정원 5명 중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, 1명은 법제처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.

[별표3의2]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단서 관련)

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단서 관련)

총계	152
정무직 계	1
원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151
고위공무원단	4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	1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	6
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4
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 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	23
행정사무관	2
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2
전산사무관	2
방송통신사무관	1
행정주사	19
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	2
공업주사·식품위생주사 또는 시설주사	2
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1
전산주사	3
방송통신주사·공업주사 또는 임업주사	3

행정주사보	11
간호주사보	1
방송통신주사보	2
행정서기	5
전산서기 또는 행정서기	1
공업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·방송통신서기 또는 행정서기	4
전산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	6
공업서기보·임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5
운전서기보	4
조리서기보	1
방호서기보	10
농림운영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3
전문경력관 가군(외국어훈련 담당)	2
전문경력관 가군(국제협력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교육개발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이러닝콘텐츠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체육교육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국제교류협력 담당)	2
전문경력관 나군(방호관리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구내식당조리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의무실운영관리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교육과정 담당)	1

전문경력관 나군(교육개발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교육평가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이러닝콘텐츠 담당)	2
전문경력관 다군(교류협력 담당)	1
임기제 교수요원(가급)	5

비고: 임기제 교수요원(가급) 정원 5명 중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, 1명은 법제처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.

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2항 본문 관련)

총계	36
정무직 계	1
위원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35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(상임위원)	4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	1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
행정사무관	11
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	2
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학예연구관·기록연구관·	
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1
행정주사	5
행정주사보	2
전산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	1
행정서기	3
운전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2

현행	개정안
제3조(대변인) 대변인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3조(대변인)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4조(인재정보기획관) ① (생략)	4조(인재정보기획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기획담당관 및 인재정보담당관 각 1명을 두며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</u> -----.
제5조(기획조정관) ① (생략)	제5조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, 법무감사혁신담당관, 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6조(공무원노사협력관) ① (생략)	제6조(공무원노사협력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무원노사협력관 밑에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두며, 노사협력담당관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
제6조의2(재해보상정책관) ① (생략)	제6조의2(재해보상정책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,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며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7조(인사조직과) 인사조직과장은 <u>부이사관 또는 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7조(인사조직과) 인사조직과장은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8조(인재채용국) ① (생략)	제8조(인재채용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인재채용국에 인재정책과·공개채용과·경력채용과·시험출제과 및 5급공채팀을 두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</u> 으로, 5급공채팀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</u> 으로, 5급공채팀장은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</u> -----.
제9조(인사혁신국) ① (생략)	제9조(인사혁신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과·적극행정과·심사임용과·개발교류과 및 통합인사정책과를 두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</u>

<u>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<u>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10조(인사관리국) ① (생략)	제10조(인사관리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인사관리국에 성과급여과·인재개발과 및 연금복지과를 두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11조(윤리복무국) ① (생략)	제11조(윤리복무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윤리복무국에 복무과·윤리정책과·재산심사기획과·재산심사관리과 및 취업심사과를 두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12조(기획부) ① (생략)	제12조(기획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며, 기획협력과장은 <u>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, 교육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으로, 교육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13조(리더십개발부) ① (생략)	제13조(리더십개발부) ① (현행과 같음)

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
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
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, 국가공
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 중 8명(4급 1명, 5급 2명, 6급
4명, 전문경력관 가군 1명)과 「공
무원 인재개발법」 제5조제1항에
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
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
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9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「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
관 직제」 제28조에서 “총리령
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”란 재
해보상정책관, 국가공무원인재
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을 말한다.
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
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
대변인, 인재정보담당관, 국제
협력담당관 및 국가공무원인
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은
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-- 10퍼센트-----

----- 9명(3·4급 1명, 4급
1명, 5급 2명, 6급 4명, 전문경력
관 가군 1명)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 삭제 >

< 삭제 >